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3. . . (제 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3.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농촌진흥청에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이행 총괄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1명(5급 1명)을 증원하고, 농촌진흥청 하부조직의 분장사무 일부를 조정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와의 협업으로 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증원한 한시정원(6급 1명)을 그동안의 평가결과에 따라 정규정원으로 전환하는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하였던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유통관리에 관한 사무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위임하는 등의 내용으로 「농약관리법」이 개정된 것에 맞추어 해당 업무를 수행하던 농촌진흥청의 정원 1명(7급 1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체하려는 것임.

3. 주요토의과제

없 음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2023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다. 합 의 : 기획재정부 및 농촌진흥청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및 신·구정원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3. 2. 3. ~ 2. 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18호 중 “안전관리·재난상황”을 “안전·보건관리, 재난상황”으로 한다.

제10조제2항제12호 중 “품질검사”를 “품질검사 및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유통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3호 중 “관리 및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를 “관리”로 하며, 같은 항 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15호를 삭제한다.

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제11조제2항에 제29호부터 제31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

30.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

31.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

제38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제42조제1항을 삭제한다.

별표 1 중 총계 “343”을 “344”로 하고, 일반직 계 “342”를 “343”으로 하며, 3급 또는 4급 이하 “331”을 “332”로 한다.

별표 4 제1호를 삭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능 이관에 따른 공무원의 이체) 농약의 유통단계 품질·유통관리
리에 관한 사무의 이관에 따라 이 영 시행 당시 농촌진흥청 소속 공무원 1명(7급 1명)은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공무원으로 보아 이를 농촌진흥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로 이체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운영지원과) ① (생 략)	제9조(운영지원과) ① (현행과 같 음)
② 운영지원과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② ----- -----.
1. ~ 16. (생 략)	1. ~ 16. (현행과 같음)
17. 삭 제	
18. <u>안전관리 · 재난상황</u> 및 위 기상황 관리기관과의 연계체 계 구축 · 운영	18. <u>안전 · 보건관리, 재난상황</u> - ----- -----
19. (생 략)	19. (현행과 같음)
제10조(연구정책국) ① (생 략)	제10조(연구정책국) ① (현행과 같음)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 다.	② ----- --.
1. ~ 11. (생 략)	1. ~ 11. (현행과 같음)
12. 농업자재의 등록 · 유통관리 및 품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 (비료의 <u>품질검사</u> 에 관한 사 항은 제외한다)	12. ----- ----- ----- <u>품질검사 및 농약의 유통 단계 품질 · 유통관리에 관 한 사항은 제외한다</u> ----- -----
13. 농업유전자원의 <u>관리</u> 및 직 <u>무상 육성품종의 보호</u> 에 관한 사항	13. ----- <u>관리</u> ----- ----- -----

<u>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성과관리 및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u> <u>15.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16. (생략) 제11조(농촌지원국) ① (생략) ②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 1. ~ 23. (생략) 24. ~ 28. 삭제 <u><신설></u> <u><신설></u> <u><신설></u>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생략) <u><신설></u>	<u>14.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사업 성과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u> <u><삭제></u> 16. (현행과 같음) 제11조(농촌지원국) ① (현행과 같음) ② ----- --. 1. ~ 23. (현행과 같음) <u>29. 직무상 육성품종의 보호에 관한 사항</u> <u>30.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성과의 이전·활용 계획 수립·추진</u> <u>31. 한국농업기술진흥원의 지원에 관한 사항</u> 제38조(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농촌진흥청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u>
---	--

제42조(한시정원) ① <u>농약 직권등록 및 등록기준 설정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3년 4월 30일까지 별표 4에 따른 한시정원을 농촌진흥청에 두며, 별표 4의 정원 1명(6급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② (생략)	<u>원해야 한다. 이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u> 제42조(한시정원) <삭 제> ② (현행과 같음)
---	---

신 · 구 정원 대비 표

[별표 1]

농촌진흥청 공무원 정원표(제38조제1항 관련)

직 급 별	현 행	개정안	증 감
총 계	<u>343</u>	<u>344</u>	+1
·	·	·	
·	·	·	
일반직 계	<u>342</u>	<u>343</u>	+1
·	·	·	
3급 또는 4급 이하	<u>331</u>	<u>332</u>	+1
·	·	·	

〈 의안 소관 부서명 〉

행정안전부 경제조직과	
연 락 처	(044) 205 - 2344